2013도6386 특가법위반(알선수재)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

공보관(전화 : 3480-1451)

1. 사안의 내용

피고인(전 ◇◇지방경찰청장)은 A저축은행 회장 B, ☆☆시장 C, 지인 D로부터 ◎◎경찰서 등에서 처리하는 각종 수사 및 민원 사건이 무마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,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특가법위반(알선수재)으로 기소됨

제1심과 원심은 B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, 검사가 상고함

Ⅱ. 판결 결과

■ 대법원(주심 신영철 대법관)은,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, 「원심이 B가 금품제공의 일시・장소 등에 관하여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, C가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확인하고 금품을 건넨 경위・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이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과

일치하지 않는 점, D가 피고인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을 들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」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